

제225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모자보건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보건소 소관)

2020. 11. 26.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모자보건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041호
- 나. 제 출 자 : 이 경 옥 의원
- 다. 제출일자 : 2020. 11. 17(화)
- 라. 회부일자 : 2020. 11. 17(화)

2. 제안이유

「모자보건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모성(母性)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 보호,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금천구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 마련 등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고 「모자보건법」에 따른 세부계획의 수립·시행(안 제3~제4조)
- 나. 모자보건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다.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에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한 행사 지원(안 제6조)
- 라. 안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 및 행사 등에 대한 경비의 지원(안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모자보건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구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2020. 11. 17. 이 경 옥 의원이 발의하였음.

○ 본 조례안은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제정 하려는 내용으로,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시책 마련 등을 규정하는 것임.

- 제정 조례안 조문별 내용

조 문	규 정 사 항	조 문	규 정 사 항
제1조	조례 제정 목적	제6조	임산부의 날
제2조	정의	제7조	재정지원
제3조	책무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제4조	세부계획 수립	제9조	시행규칙
제5조	모자보건사업	부칙	시행일

- 전국 지자체 모자보건 조례 제정 현황

자치단체	법규명	제/개정일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	2016.8.3.
경기도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	2020.5.19.
경북 경주시	경주시 모자보건 조례	2020.7.10.
광명시	광명시 모자보건 조례	2020.3.25.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모자.부자보건 조례	2019.3.25.
김해시	김해시 모자보건 조례	2020.10.8.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모자.부자보건 조례	2020.3.10.
경기도 이천시	이천시 모자보건 조례	2019.10.7.
경남	경상남도 모자보건 조례	2019.5.2.
전북	전라북도 모자보건 조례	2017.2.3.
전남	전라남도 모자보건 조례	2019.8.1.
충남 부여군	부여군 모자보건사업 관련 조례	2017.11.10.
전북 완주군	완주군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조례	2019.1.3.
전남 해남군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2020.4.16.

○ 모자보건은 여성과 어린이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으로 모자보건은 우리나라 헌법 제36조제2항에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또한 국제적으로는 1948년 12월 10일 UN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 제25조제2항에는 "어머니와 어린이는... 각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모성의 권리와 아동의 권리를 강조하고 있음. 더불어 모자보건법 제3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모성들과 그 자녀들은 다음 세대의 출산인구이며,

국가의 힘이 되는 잠재력을 가진 인구임을 다시금 재인식하되, 이를 뒷받침하는 모자보건사업이 강조되고 있음.

○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반영한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모자보건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라목에서는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음.

모자보건사업들에 대하여 관련 상위법률에 따라 자치법규인 조례를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모성과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임 관련법령 1부.

모자보건법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2. 22., 2019. 4. 23.>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모성"이란 임산부와 가임기(可妊期) 여성을 말한다.
3.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4.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5. "미숙아(未熟兒)"란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6. "선천성이상아(先天性異常兒)"란 선천성 기형(奇形) 또는 변형(變形)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7.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
8. "모자보건사업"이란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生殖健康) 관리와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9. 삭제 <2017. 12. 12.>
10. "산후조리업(産後調理業)"이란 산후조리 및 영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이하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11. "난임(難妊)"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12. "보조생식술"이란 임신을 목적으로 자연적인 생식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의료행위로서 인간의 정자와 난자의 채취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1. 7.]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2.>

[전문개정 2009. 1. 7.]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4. 6., 2007. 5. 17., 2009. 12. 29., 2011. 7. 14., 2017. 4. 18., 2018. 12. 24.>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 가. 소류지(小溜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 다. 농업자재의 관리
 -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 바. 농가 부업의 장려
 - 사. 공유림 관리
 -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 자. 가축전염병 예방
 -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 타. 중소기업의 육성
 -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 가. 지역개발사업
 -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
 -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 사. 자연보호활동
 -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 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
 -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